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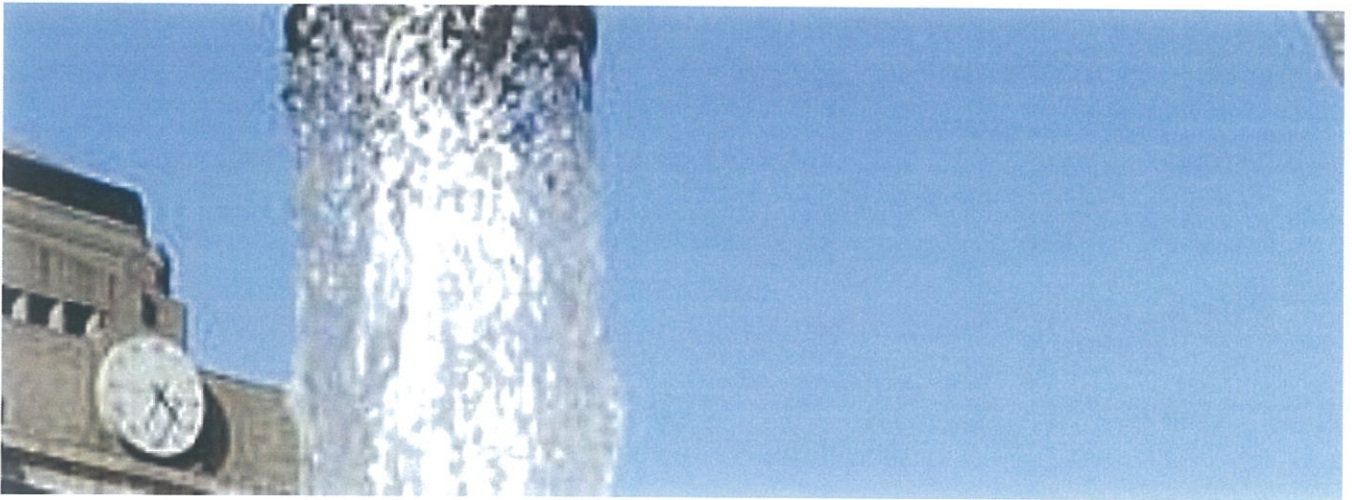
HOME 사회

# 수도요금 체납 허술한 대응...서울시 상수도본부 수억 여 원 허공에 날려

체납자 재산 있지만 체납처분 안해 소멸시효 3년 경과 징수 못해

이승규 기자 (사) 승인 2018.03.26 16:01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고액의 수도요금을 체납한 사용자들이 요금징수 소멸시효 3년을 버텨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요금 징수 감시망을 빠져나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수도요금을 제대로 징수 못한 수도사업소의 허술한 행정력에 우려와 함께 강한 경고를 가했다.

25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상수도사업본부 기관운영 감사결과(지난해 9월13~26일)'에 따르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8개 수도사업소가 2016년 기준 수도요금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87명의 체납 징수 과정에서 18명의 요금을 제때 징수하지 않아 2억3000여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1260만원의 고액의 수도요금을 체납한 것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는 수도요금 체납금과 연체금의 징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등은 소멸시효 동안 재산 압류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요금 징수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일부 사용자와 소유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압류)을 하지 않아 시효결손 대상으로 결정돼 더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납기를 기준으로 시효결손 처분을 하는 등 상수도사업본부의 어이없는 행정력이 드러나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서초구 방배동 한 급수설비 A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수도요금 8건 500만원을 체납했으나 징수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는 재산압류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했고 결국 상수도사업본부는 2016년 6월24일과 2016년 12월28일 2회에 걸쳐 체납액을 시효결손 처분해 해당 요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수도요금은 사용한 사용자가 체납했을 경우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으로 부터 체납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상수도본부는 소유자와 관리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고 그대로 결손 처리해 수도요금 7600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광진구 A사우나도 2013년 6월부터 1년 동안 사용한 수도요금 4056만원이 체납됐지만 상수도본부는 해당 건물 소유주 B씨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았다. 체납요금은 지난해 3월 31일 자로 징수시효가 종료됐고 결국은 결손처리했다.

강서수도사업소도 시효중단 날짜를 잘못 계산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총 6명을 상대로 시효결손 처리해 수도요금 7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 사업소는 압류등기 말소일을 확인하지 않고 시효결손을 해 6900만원의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권을 포기했다. 2011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수도요금 515만원을 체납한 구로구의 한 다세대주택은 2016년 6월 14일 압류등기가 말소되는 바람에 소멸시효가 2019년 6월 15일로 연장됐지만 상수도본부는 지난해 8월 25일 시효결손 처분했다.

이같은 시 감사위의 지적에 “수도요금이 미납되면 독촉고지 후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지적된 일부사항의 경우 8개 수도사업소에서 체납담당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미압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상수도사업본부는 해명했다.

그러자 시 감사위는 “수도요금은 사용자와 소유자가 연대책임으로 납부토록 돼있어 별도의 재산조회 과정이 없어도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를 확인하여 재산을 압류할수 있고 2016년 수도요금 체납중 고액체납자(387명, 200만원 이상)가 0.03%에 불과한 점에서 압류처분 관련 행정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상수도사업본부의 해명을 일축했다.

더불어 시 감사위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앞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재산을 압류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경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 시효중단 사유 발생 시 요금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해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감사위는 또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수도요금 등 869만8350원은 시효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라”고 시정요구했다.

이승규 기자 [press3361@hanmail.net](mailto:press3361@hanmail.net)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